

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. 6. 1 선고 2015가단6117 판결 [건물등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고(선정당사자)A

피고1. B

2. C

3. D

4. E

5. F

6. G

7. H

8. I

9. J

10. K

11. L

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J

변론 종결2016. 4. 27.(피고 1 내지 6, 9, 11에 대하여)

2016. 5. 18.(피고 7, 8, 10에 대하여)

판결 선고2016. 6. 1.

주 문

1. 원고(선정당사자)에게,

가. 피고 B은 아산시 M 중 별지 도면1 표시 5, 6, 7, 8, 9, 10, 11, 12,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

선내 'ㄴ' 부분 지상 시멘트블럭조 스테이트 단층주택 49㎡를 철거하고, 위 점유 부분 토지를 인도하고,

나. 피고 C는 아산시 M 중 별지 도면1 표시 1, 2, 3, 4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'ㄱ' 부분 지상 시멘트블럭조 스테이트 단층주택 39㎡를 철거하고, 위 점유 부분 토지를 인도하고,

다. 피고 D은 아산시 M, N, O 중 별지 도면1 표시 56, 57, 58, 59, 60, 61, 62, 63, 64, 65, 66, 5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'ㄷ' 부분 지상 시멘트블럭조 스테이트 단층주택 67㎡를 철거하고, 위 점유 부분 토지를 인도하고,

라. 피고 E, F은 각 1/2지분에 관하여, 아산시 ○ 중 별지 도면2 표시 1, 2, 3, 4, 5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'ㄱ' 부분 지상 시멘트블럭조 스테이트 단층주택 56㎡를 철거하고, 위 각 점유 부분 토지를 인도하고,

마. 피고 G은 아산시 ○ 중 별지 도면2 표시 6, 7, 8, 9,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'ㄴ' 부분 지상 시멘트블럭조 스테이트 단층주택 6㎡를 철거하고, 위 점유 부분 토지를 인도하고,

바. 피고 H은 아산시 P 중 별지3 도면 표시 7, 8, 9, 10, 11, 12, 13, 14, 15, 16, 17,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'ㄴ' 부분 지상 시멘트블럭조 스테이트지붕 단층주택 98.1616㎡ 중 별지 도면4 표시 1, 2, 4, 3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7) 부분 29.84㎡를 철거하고, 위 점유 부분 토지를 인도하고,

사. 피고 I은 아산시 P 중 별지3 도면 표시 7, 8, 9, 10, 11, 12, 13, 14, 15, 16, 17,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'ㄴ' 부분 지상 시멘트 블럭조 스테이트지붕 단층주택 98.1616㎡ 중 별지 도면4 표시 3, 4, 5, 6, 7,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ㄴ) 부분 29.3216㎡를 철거하고, 위 점유 부분 토지를 인도하고,

아. 피고 K은 아산시 P 중 별지3 도면 표시 7, 8, 9, 10, 11, 12, 13, 14, 15, 16, 17,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'ㄴ' 부분 지상 시멘트 블럭조 스테이트지붕 단층주택 98.1616㎡ 중 별지 도면4 표시 6, 7, 8, 9, 10, 11, 12,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ㄷ) 부분 39㎡를 철거하고, 위 점유 부분 토지를 인도하고,

자. 피고 J은 3/5지분에 관하여, 피고 L은 2/5지분에 관하여, 아산시 P 중 별지 도면3 표시 18, 19,

20, 21, 22, 23, 24, 25, 26, 27, 28, 29, 1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'ㄷ' 부분 지상 시멘트블럭조 슬레이트지붕 단층주택 45m²를 철거하고, 위 각 점유 부분 토지를 인도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피고 B, C, D, G, H, J, K, L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청구의 표시

1) 원고(선정당사자)와 선정자들은 아산시 M 대 1,860m², N 대 258m², O 대 702m², P 대 1,091m²의 공유자들이다.

2) 피고 B은 위 M 토지 지상에 주문 기재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, 기간 없는 토지 임대차계약에 의한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.

3) 나머지 피고들은 위 각 토지 지상에 무허가인 주문 기재 각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각 부지 부분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.

4) 피고들은 원고(선정당사자)와 선정자들의 토지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, 각 건물을 철거하고 각 점유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.

나. 적용법조

1) 피고 B, G, J, K, L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(자백간주에 의한 판결)

2) 피고 C, D, H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2. 피고 E, F, I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인정사실

1) 원고(선정당사자)와 선정자들은 1998. 5. 22. Q으로부터 아산시 ○ 대 702㎡(이하 '이 사건 제1토지'라 한다), P 대 1,091㎡(이하 '이 사건 제2토지'라 한다)를 1/8지분씩 상속하였고,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2005. 6. 16.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(선정당사자)와 선정자들 명의로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2) 피고 E, F은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도면2 표시 1, 2, 3, 4, 5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'ㄱ' 부분 지상 시멘트블럭조 슬레이트 단층주택 56㎡(이하 '이 사건 제1건물'이라 한다)를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고, 피고 I은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3 도면 표시 7, 8, 9, 10, 11, 12, 13, 14, 15, 16, 17,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'ㄴ' 부분 지상 시멘트블럭조 슬레이트지붕 단층주택 98.1616㎡ 중 별지 도면4 표시 3, 4, 5, 6, 7,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ㄴ) 부분 29.3216㎡(이하 '이 사건 제2건물'이라 한다)를 점유하고 있다.

나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원고(선정당사자)는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로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가지므로, 피고 E, F, I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(선정당사자)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철거하고 그 점유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.

다.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

1) 피고 E, F은, 이 사건 제1건물은 토지 소유자의 동의 아래 건축되었고, 자신들이 2004년경 이 사건 제1건물을 매수한 이후 현재까지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으며, 이 사건 제1건물을 건축물대장에 등재함으로써 지상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(선정당사자)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.

갑 제6호증, 을라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, 선정자 R에게, 피고 E가 2012. 4. 12. 300,000원, 2013. 6. 14. 200,000원을, 피고 E, F이 2014. 10. 30. 각 150,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,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제1토지 중 이 사건 제1건물 부지 부분에 관하여 지상권을 가진다거나 그 밖에 위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

인정할 증거가 없다.

피고 E, F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2) 피고 I은, 이 사건 제2토지 소유자는 1970년경 이 사건 제2건물이 신축된 후 40년 이상 토지 소유권을 주장한 적이 없으므로 20년 전에 이 사건 제2건물 부지 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.

을바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, 이 사건 제2건물이 1970년경 신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,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·공연하게 이 사건 제2건물 부지 부분을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나, 한편 갑 제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피고 I이 2006. 12. 10. 선정자 R에게 입금자 "I 외 3"으로 하여 300,000원, 2008. 7. 18. 입금자 "I 지료"로 하여 100,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, 피고 I 또는 이 사건 제2건물의 종전 소유자가 소유의 의사로 평온·공연하게 그 부지 부분을 점유하였다는 추정은 유지될 수 없다.

피고 I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(선정당사자)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김애정

별지